

<p>*비 고</p> <p>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p> <p>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등 조정산식(제3조의2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년대비 증가율</th> <th>납 부 할 점 용 료 등</th> </tr> </thead> <tbody> <tr> <td>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td> </tr> <tr> <td>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td> </tr> <tr> <td>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td> </tr> <tr> <td>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td> </tr> <tr> <td>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td> </tr> <tr> <td>500퍼센트이상</td> <td>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td> </tr> </tbody> </table>	전년대비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등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	
전년대비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등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														
<p>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중 “별표”를 “별표1에서 정한”으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정하</p>	<p>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p> <p>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p> <p>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2에서 정한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징수교부금)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토지의 점용	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나. 식물의 재식(농업 제외)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라.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4. 산출물의 채취의 산정기준란의 요금을 가산한다.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등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2.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구 분	산 정 기 준
3. 유수의 점용	<p>가. 인수(지하수채취의 경우 포함)</p> <p>(1) 전기사업 m²/초당 연액 200,000원</p> <p>(2) 공업용수(전기사업 제외)</p> <p>(가) 관경 800mm이하</p> <p>1) 관경 25mm이하 월액 10,000원</p> <p>2) 관경 26mm이상 50mm까지 월액 40,000원</p> <p>3) 관경 51mm이상 75mm까지 월액 60,000원</p> <p>4) 관경 76mm이상 100mm까지 월액 100,000원</p> <p>5) 관경 101mm이상 200mm까지 월액 120,000원</p> <p>6) 관경 201mm이상 300mm까지 월액 160,000원</p> <p>7) 관경 301mm이상 400mm까지 월액 220,000원</p> <p>9) 관경 401mm이상 500mm까지 월액 280,000원</p> <p>10) 관경 501mm이상 600mm까지 월액 380,000원</p> <p>11) 관경 601mm이상 700mm까지 월액 500,000원</p> <p>12) 관경 701mm이상 800mm까지 월액 600,000원</p> <p>(나) 관경 801mm이상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m²당 200원씩 적용 $\text{초당 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2m)}}{146^2 \times 60}$</p> <p>(3) 농업용수</p> <p>(가) 0.05-0.5m³/sec까지 연간액 10,000원</p> <p>(나) 0.5m³/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p>나. 배수(주수)</p> <p>(1) 공업용수의 배수 가. 인수중 공업용수의 1/3 ※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2) 기타용수의 배수 가. 인수중 공업용수의 1/4 ※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4. 산출물의 채취	가. 토석·사력의 채취 (1)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사·사력 도매 가격 평균치의 10/100 (2)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3) 위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하며,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5. 전 주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p>*비 고</p> <p>1. 인근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발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p> <p>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p> <p style="text-align: right;">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할 수 있다.</p>	
<p>〈별표2〉</p> <p>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의2관련)</p>	
산출점용료등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등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